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9. 16.(금) 10:3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2년 9월 7일

○ 회부일자: 2022년 9월 13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 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개별법령에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

○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정한 규정 위헌 판결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19두59851 판결]로 해당 조문 삭제

4. 주요내용

○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에서 1억5천으로 상향(제2조제1항제1호)

○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한 문구 삭제
(제2조의3 및 별표2)

○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 정비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보상한도 규정과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19두59851 판결]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의 개정사항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금액 기준을 1인당 1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하도록 함
- 안 제2조의3 제3항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사항을 반영하여 남녀 좌석구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
- 위헌 판결은 사건 ‘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’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2022년 1월 27일 판결한 내용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「전라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3 제2호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음
- 또한, 제2조의3 제3항 관련 별표2의 나항의 “남·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·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”를 삭제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,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대법원 판결사항을 반영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